

일시 : 2015.8.25.(화) 17:00
장소 : 안암동주민센터 4층

- 2015년 8월 (제30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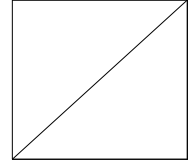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제2015-9호 심의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권영향평가 결과	1
2	보고사항	제29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49
3	보고사항	1) 성북인권페스티벌 기획초안	52
		2) 1기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및 구성 결과	55
		3)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교육 사업	57
		4) 2015년 8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59
		5)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60
		6) 2015년 직원 인권 특강 운영 계획	66

【공개/비공개】

성 북 구
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5-9호
보 고 연 월 일	2015. 8. 25.(화)

심
의
사
향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

보고자 |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목 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8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13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9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4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30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37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43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규정(안 제3조)
- 다.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명시(안 제5조)
- 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1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건강관리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라. 「모자보건법」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약기간	2015. 06. 25 ~ 06. 30
	입법예고	2015. 07. 09 ~ 07. 29 (20일) 매체 : 구보, 기타 : 성북구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8. 12.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간호7급	최현희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1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7. 2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필요시 별지사용)</p> <p>※ 검토의견 별지참조</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 제안이유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 주차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장 공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북구민대상 수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내용 신설
(안 제5조의2)

- 주차 구획(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유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공유 기업이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여 운영

나. 성북구민 대상 수상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 규정마련(별표 1)

- 성북구민대상을 받은 자는 구민대상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9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교통지도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 주차장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계획 (교통지도과-16235)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협 의기간	2015. 6. 29 ~ 7. 3
	입법예고	2015. 6. 11 ~ 7. 1 (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8월중	
	의회상정	2015. 8월 (임시회)	
첨부자료	필수자료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교통지도과	행정7급	류일환	348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2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7. 2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1. 개정이유

- 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정부 등의 특화된 자본조달은 그 대상과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크게 증가하고 창업 및 운영자금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공익적 재원이 필요
- 나. 2015년 1월 우리구와 구금고 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매년 1억 5천만원씩 출연 계획이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명목으로 명시적 재원을 출연
-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제2항의 기금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사회투자 기금을 설치하는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 27조)

- 재원 :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 용도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 등
- 운영 : 필요시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에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등

-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구금고 협력사업비(사회적 투자기금) 세출예산 출연금
2015 회계연도 추경에 반영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P15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사회적경제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약기간	2015. 7. 6 ~ 7. 10
	입법예고	2015. 7. 16 ~ 2015. 8. 5까지(20일간) 매체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8. 12	
	의회상정	2015. 제236회 임시회 (8.31~ 9.12)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사회적경제과	행정7급	장진희	2241-3894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3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7. 21)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公款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하였기에, 이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후속조치로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을 별표 1에 규정(안 제4조제4호)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하고 상위법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제2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8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23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사회적경제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 의기간	
	입법예고	2015. 7. 9 ~ 2015. 7. 29(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8월	
	의회상정	2015. 8월~9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기획예산과	행정7급	이소영	2241-3826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4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8. 7)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기에 위원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합운영 (안 제6조)
- 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안 제7조)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30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기획예산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 의기간	
	입법예고	2015. 7. 9 ~ 2015. 7. 29(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8월	
	의회상정	2015. 8월~9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기획예산과	행정7급	정진환	2241-3825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5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7. 28)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p>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p>	<p>[제2조 (위원회 구성)]1항</p> <p>‘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서,</p> <p>‘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보다는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1. 개정이유

- 가. 최근 어르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가 “어르신 행복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
- 나. 현재 운영 중인 성북구 노인증진에 관한 조례가 미흡하여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
- 다.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 정책의 내실화 (안 제6조~제16조)

-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관련 사업이 증가 되고 있어, 관련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초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의 장려,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설치,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 노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삶과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편의증진, 자살 예방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17조~제23조)

-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수 15명 이내의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34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어르신복지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5. 8. 13 ~ 2015. 9. 2(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9월	
	의회상정	2015. 10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어르신복지과	행정7급	김나정	2241-2523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6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8. 13)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필요시 별지사용)</p> <p>※ 검토의견 별지참조</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건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p>	<p>제3조(정의) 1호</p> <p>○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와 관련하여</p> <p>‘노인복지법’을 살펴 본 바 노인을 정의하기 위한 연령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치매관리법도 동일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법에 의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p> <p>제3조에 의하면 65세 미만의 자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이 조례로 인한 복지시책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5세 미만의 자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p> <p>제18조(구성) 1항</p> <p>○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와 관련하여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등 구체적인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p> <p>제20조(해촉) 4호</p> <p>○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와 관련하여 이 사유의 판단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해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거나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p>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1. 개정이유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 2015년 7월 1일 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 이에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후속조치로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 나. 조례 전문에 걸쳐 상위법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
- 다.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 내용 규정(안 제7조)
- 라. 성평등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안 제8조)
- 마. 제3장의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한 성평등 촉진 시책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등으로 양성평등 촉진 시책으로 정비(안 제16조 ~ 제36조)
- 바. 성평등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41조)
- 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8조(성평등기금)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아. 기타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세 별첨)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42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여성가족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약기간	2015. 7. 1 ~ 7. 31
	입법예고	2015. 8. 13 ~ 9. 2 (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9. 18	
	의회상정	2015. 제237회 임시회 (10.7~ 10.15)	
첨부자료	필수자료	조례개정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행정7급	제형호	257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7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8. 18.)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p>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p>	<p>[제9조 (구성)]3항</p> <p>‘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규정에서,</p> <p>‘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규정보다는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여’ 등 구체적인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15.8.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분석평가 기본 방향과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안 제4조)

-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양성평등정책 및 분석평가 전문가, 의회 의원, 구민 등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규정(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의2
-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P63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여성가족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약기간	2015. 7. 1 ~ 7. 31
	입법예고	2015. 8. 13 ~ 9. 2 (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5. 9. 18	
	의회상정	2015. 제237회 임시회 (10.7~ 10.15)	
첨부자료	필수자료	조례제정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행정7급	제형호	257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5-28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5. 8. 18.)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p>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3조 (위원회 구성)]1항</p> <p>‘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을 겸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서,</p> <p>‘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규정보다는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성평등 기본 조례와 균형을 맞추어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p>	

제29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 개최개요

- 일 시 : 2015. 6. 30.(화) 17:00~19:30
- 장 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참석자 : 9명
- 주요안건
 - 조례·규칙 제·개정안 3건 인권영향평가 심의
 - 성북구청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 심의
 -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TF 구성(안) 보고
 - 주민과 함께 하는 인권공모전 추진 계획(안) 보고

2. 회의결과

심의 및 결정사항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외 1개 조례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권고결정
- 인권위원회 권고 제26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9조4항3호 중 ‘품위 손상’ 규정을 삭제
 - 별지 21호 인적사항 공고 중 ‘연령, 직업’ 란을 삭제하도록 권고 결정함
- 인권위원회 권고 제27호 : 성북구청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
 - ‘주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내용 일부 수정하여 권고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함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

(부서명 : 자치행정과)

심의대상	심의 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 여부	부서의견	비고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권고 결정	자치회관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프로그램 강사와의 계약 시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와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개 시 지나친 개인정보의 공개로 참여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	수용	제9조(강사) ④ 동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 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u>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고문 내 ‘연령’, ‘직업’ 삭제	
				제4조(이용의 제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	

(부서명 : 여성가족과)

심의대상	심의 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 여부	부서의견	비고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권고 결정	제4조, 23조, 24조의 위원회 구성 시 아동 보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실현, 남성의 보육권 보장 등을 위하여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미수용	<u>보육환경의 특성 상</u> <u>보육참여인원의 절대 다수가</u> <u>여성인 상황으로 아버지교육,</u> <u>사회인식개선, 남성육아참여 독려</u> <u>등을 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u> <u>확대한 이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u> <u>판단됨.</u>	

(부서명 : 행정지원과)

심의대상	심의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p>성북구청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p>	<p>권고 결정</p>	<p>성북구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p>	<p>수용</p>	<p>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의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p>	
		<p>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실시하며</p>	<p>수용</p>	<p>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확보방안 추진은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25개 자치구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대안을 만들어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시 인권센터의 협조를 얻어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함</p>	
		<p>근로계약서에서 드러나는 노동권침해요소를 개선할 것을 권고</p>	<p>수용</p>	<p>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인권센터의 협조를 얻어 노동권침해요소가 있을 경우 개선 조치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인권센터의 협조를 얻어 노동권 침해요소가 있는 경우 개선하여 다음 계약시 적용</p>	

❖ 보고사항 4-1.

성북인권페스티벌 기획초안

□ 추진배경

- 안암동 인권청사를 거점으로 한 주민과 함께 하는 인권페스티벌
- 주민 참여와 지역의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
- 주민생활 속 가깝게 있는 인권 및 성북구만의 인권문화 콘텐츠 발굴 및 실험의 장

□ 기획단 구성

- 구성 : 김덕진, 이원재, 김은영, 배미영(이상 인권위원),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사무처장), 김정아, 오미숙(이상 인권센터)차회의 진행
- 운영 : 3차 기획회의(브레인스토밍, 기획방향 및 기획안 논의)

□ 전체행사 개요

- 행사명 : 성북인권페스티벌 “0000”
- 일시 :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11시~20시
- 장소 : 안암동 인권청사(안암동 주민센터) 일대
- 프로그램 : 인권콘서트, 인권청사 선포식, 인권포럼, 인권워크숍 외 각종 부대행사
- 주최 : 성북구 인권센터
- 주관 : 성북인권페스티벌 기획단
- 후원 : 성북구,

□ 주요프로그램

1. 인권토크콘서트 “0000”

- 1) 시간: 10월31일(토) 오후6시~8시
- 2) 장소: 인권청사 6층 강당
- 3) 내용
 - 인권도시 성북, 인권센터, 인권청사의 의미를 알리는 토크콘서트
 - 사회자가 토크 출연자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김제동의 토크투유 방식)
 - 토크와 공연을 함께 할 유명 뮤지션 섭외
 - 출연진: 5명(사회자 포함) 내외
 - 영상, 공연 등 배치

2. 인권마켓(가칭)

- 1) 시간: 10월31일(토) 오전11시~오후6시
- 2) 장소: 주차장~청사 외곽
- 3) 내용
 - 인권도서전
 - 인권관련 아트상품판매
 - 참여 셀러와 인권 관련 상품 기획 논의
 - 인권과 관련된 주민참여 제작 워크숍 프로그램
 - 규모: 판매부스 20, 워크숍부스 5개
- 4) 추진방법
 - 정릉시장 '개울장' 연계
 - 실무기획단 담당자 배치
 - 인권 관련 작업자 별도 섭외

3. 부대공연

- 1) 시간: 10월31일(토) 오전11시~오후5시
- 2) 장소: 1층 로비, 옥상 등 청사 곳곳
- 3) 내용
 - 음악 공연: 인디밴드 버스킹 공연 등
 - 퍼포먼스 공연: 인권연극제 연계 단막극 공연
 - 주민 공연: 주민, 인권단체 회원 등 아마추어 공연
 - 청사 곳곳에서 공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배치
- 4) 추진방법
 - 기획단 직접 섭외
 - 청문공, 감성달빛 등 지역 주체 연계
 - 인권연극제(장애문화예술 '판') 연계
 - 지역 참가팀 별도 모집

4. 인권포럼

- 1) 시간: 10월31일(토) 오후1시~오후5시
- 2) 장소: 4층 다목적실, 3층 인권도서관 등
- 3) 내용
 - 지역의 인권주체들이 다양한 주제의 작은 포럼을 기획

- 3층, 4층의 작은 회의공간, 인권도서관 등에서 개별 포럼들을 함께 진행

4) 추진방법

- 포럼 기획단 구성
- 성북지역 인권 주체들의 포럼 기획 접수

5. 전시

- 1) 시간: 10월31일(토)~
- 2) 장소: 1층 로비 및 청사 곳곳
- 3) 추진방법
 - 로사이드, 카페 별꼴 연계
 - 성북창작터 연계

□ 타임테이블

	1층 로비	3층 인권도서관	4층 회의실	6층 강당	주차장		옥상
11:00~	부대공연				인권 마켓	워크 샵	부대공연 /전시
12:00~							
13:00~		인권포럼	인권포럼				
14:00~							
15:00~							
16:00~							
17:00~							
18:00~				인권 토크콘서트			
19:00~							
20:00~							

□ 추진일정

	8월				9월					10월				
	3	10	17	24	1	7	14	21	28	5	12	19	26	31
프로그램 확정														
공연섭외확정														
셀러모집														
웹플라이어 제작														
웹홍보														
언론홍보														

1기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및 구성 결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제12조(인권센터시민위원)

■ 시민위원 모집 개요 및 지원 현황

- 모집기간 : 2015. 6. 29.(월)~7. 8.(수) 10일간
- 모집분야 : 전문위원 3명, 시민위원 3명
- 지원현황 : 전문위원 3명(남 3명)
 시민위원 34명(남 13명, 여 21명)

■ 심사결과 개요

- 심사일시 : 2015. 7. 16.(목), 11시
- 심사위원(5명)
 - 외부(2명) : 김덕진 성북구인권위원, 김홍미리 성북구인권위원
 - 내부(3명) :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장, 담당
- 심사기준(총10점)
 - 경력(6점) : 인권활동(3점), 자격증(3점)
 - 참여도(2점) : 구정이해(1점), 구정참여(1점)
 - 인권교육 이수 여부(2점)
- 최종결정
 -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 + 소속, 분야, 지역 + 성별
- 심사결과
 - 전문위원 : 0명(총점 5점 미만)
 - 시민위원 : 13명 선정(남 4, 여 9)

■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진행

- 일 시 : 2015. 7. 27.(월) 오후 3시~5시
- 장 소 : 미래기획실

■ 인권센터 시민위원 인권교육 추진 계획

-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시~18시(총 3강, 6시간)
- 장소 : 안암동 청사 4층 강의실
- 교육(안)

시간	구분	내용	비고
1000~1200	1강	함께 열기(ice-breaking): 소개	이기원
		우리지역의 인권 문제 나누기(브레인스토밍)	인권교육단체 오다
1200~1300		점 심 식 사(도시락+티타임)	
1300~1500	2강	인권의 제도화, 현재와 전망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1500~1700	3강	인권침해사건 사례 살펴보기-무엇이 인권침해인가	이윤상 서울시민인권보호관
1700~1730		수료식 및 기념촬영	
		친교의 시간	

■ 운영 계획

- 분기별 정례모임
 - 1차 정례모임 : 2015. 10월
 - 2차 정례모임 : 3025. 12월
-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
 - 지역 및 분야별 인권 상황에 대한 신고 및 점검(정례모임 시 공유)
 -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개진
 - 인권침해진정사건에 대한 의견 조회

❖ 보고사항 4-3.

-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교육 사업 -

[성북구 인권센터]

□ 추진 배경

- 청소년은 고민상담의 상당부분을 또래친구들과 나누고 있음
(부모, 교사에 대한 상담은 각 18.5%, 1.2%였으나 친구는 53.6%. 통계청 2008)
- 노동과 관련된 피해는 그 회복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임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한 처우 31.9%, 대응하지 못함 7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과 또래상담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침해된 권리에 대한 회복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추진 방법

- 기획자문회의 구성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송 민 기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인디학교장)	이 찬 우	알바노조
안 영 신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공동대표)	류 한 승	서울시노동권익센터
윤 정 섭	고명경영고등학교	최 현 임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조 병 진	대일관광고등학교	유 재 선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신 흥 규	고려대부속고등학교	김 정 아	성북구 인권센터
김 유 라	공간 민들레	오 미 숙	성북구 인권센터

- 교육 내용

- 노동법 및 인권일반, 상담기술 등 기본 소양 강의
- 노동인권침해 사례 연구 및 상담실습 등 전문가양성교육(10주교육, 수료증 발급)

□ 향후 계획

- 수료증 발급 후 △ 청소년 상담 기관 상담활동 연계, △ 직업체험 및 진로 연계방안, △ 또래 상담사와 상담 과정에서 만나 청소년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캠프(평가 워크숍) 진행 등

□ 교육 내용 상세(장소 : 평생학습관)

구분	교육내용
1강	노동인권 이해
2강	청소년 노동현황 파악
3강	노동법 및 노동인권침해사례연구
4강	실습, 모의노사교섭 등
5강	상담의 기본원리와 자세
6강	기관 탐방 및 현장체험
7강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
8강	모니터링 분석결과 및 평가회

□ 교육 일정(매주 화, 목, 총8차시 16시간)

- 1기 : 8/11~8/28(신청자 25명, 현재 진행 중)
- 2기 : 9/11~9/24(모집 중, 17시30분~19시 30분)
- 3기 : 10/27~11/19
- 노동캠프 : 11/20~11/21(1박2일)

❖ 보고사항 4-4.

2015년 8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 일 시 : 2015. 10. 7 ~ 28(매주 수요일 19:00~21:00)
- 장 소 :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2강 심우장)
- 참석대상 : 주민 50여명
- 교육방법 : 인권 전문가 및 교수진 강의 및 토론
- 교육내용

회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강	10. 07(수)	일제 강점기와 국가폭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강	10. 14(수)	만해의 꿈과 저항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3강	10. 21(수)	일본군 성노예할머니 인권 회복문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4강	10. 28(수)	올바른 과거청산의 방향과 과제	한홍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보고사항 4-5.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우리구에서 공공건축물을 신축, 증축 할 때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고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27조
- 구청장 구두 지시사항 (2015.6.8. 인권센터 업무보고 관련)

II

추진목적

- 공공건축물 대상 주민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인권영향평가를 안착시킴
- 인권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구축함
- 인권영향평가 시행의 막연함과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세부 프로세스를 강화함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필요성

- ✓ 연령, 성별, 장애유무, 국적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각에서 심화된 평가 필요
- ✓ 개별 건축물마다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층이 다르므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필요
-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공공 시설물은 향후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III

해 결 과 제

- 실시 기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제도적 완결성 필요
- 해당 부서가 다중화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이 실종될 수 있음
- 장기적 건축 프로세스의 지속적 평가 필요
- 평가 비용 발생 최소화 필요

IV

인권영향평가 적용대상 및 현황

■ 적용대상

《 區 예산을 활용하여 신축, 증축 및 개보수하는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실시
-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도 인권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주관부서와 인권센터 협의)

■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

(2015. 7. 13 현재)

구분	개소	용도	주관부서	비고
공공청사	24개소	공공기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어린이집(국공립)	29개소	어린이보육시설	여성가족과	
복지시설	12개소	(장애인, 노인, 종합) 복지관 등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노인여가시설 (구립)	32개소	경로당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18개소	도서관, 교육기관 등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문화시설 등	19개소	스포츠센터, 극장 등	문화체육과	
공원시설		공원	공원녹지과	

신규건립(시범실시) 현황 : 『청소년 문화의 집』 (2016.9월 준공 예정)

- 위 치 : 정릉동 1031-2외 1필지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50㎡
- 사업비 : 3,986백만원
- 현재 추진사항 : 설계공모 등록(6.11~12), 작품제출(7.20)

확대적용 대상 현황

사업명	위치	규모	진행사항	사업비 (단위: 백만원)	주관 부서	준공 (예정)
정릉동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정릉동 1031-2,3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50㎡	설계공모 진행중	3,983	교육 청소년과	2016.9월
정릉시장 공영 주차장 신축공사	정릉동 405-4외2필 지	지상3층 연면적 524㎡	설계발주 예정	1,309	일자리 경제과	2016.8월
성북펜싱전용 체육관신축공사	종암동 104-4	지상3층 증축면적624㎡	건립계획 방침수립	1,380	문화 체육과	
장위문화복지 타운 건립	장위동 223-24, 224-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90㎡	부지매입 9월말 완료 예정	2,657	문화 체육과	2016.12월
돌곶이 복합문화 예술센터 리모델링	석관동 189-189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46㎡	건립계획 방침수립	589	문화 체육과	
상월곡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상월곡 97-22외3필 지	지상3층 증축면적36㎡	설치시설 변경방침 수립중	130	어르신 복지과	2015.12월
공정무역전시 판매장신축공사	동선동1가 85-102	지상2층 연면적70㎡	건립계획 재검토	190	사회적 경제과	
세대통합형부모 지원센터 리모델링	미정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66㎡	예산확보 및 사업부지 매입 검토중	490	여성 가족과	

V

세부추진계획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 위촉 요건

- 인권감리 및 공공건축 전문가
- 인권센터장 당연직 포함

● 평가단 구성(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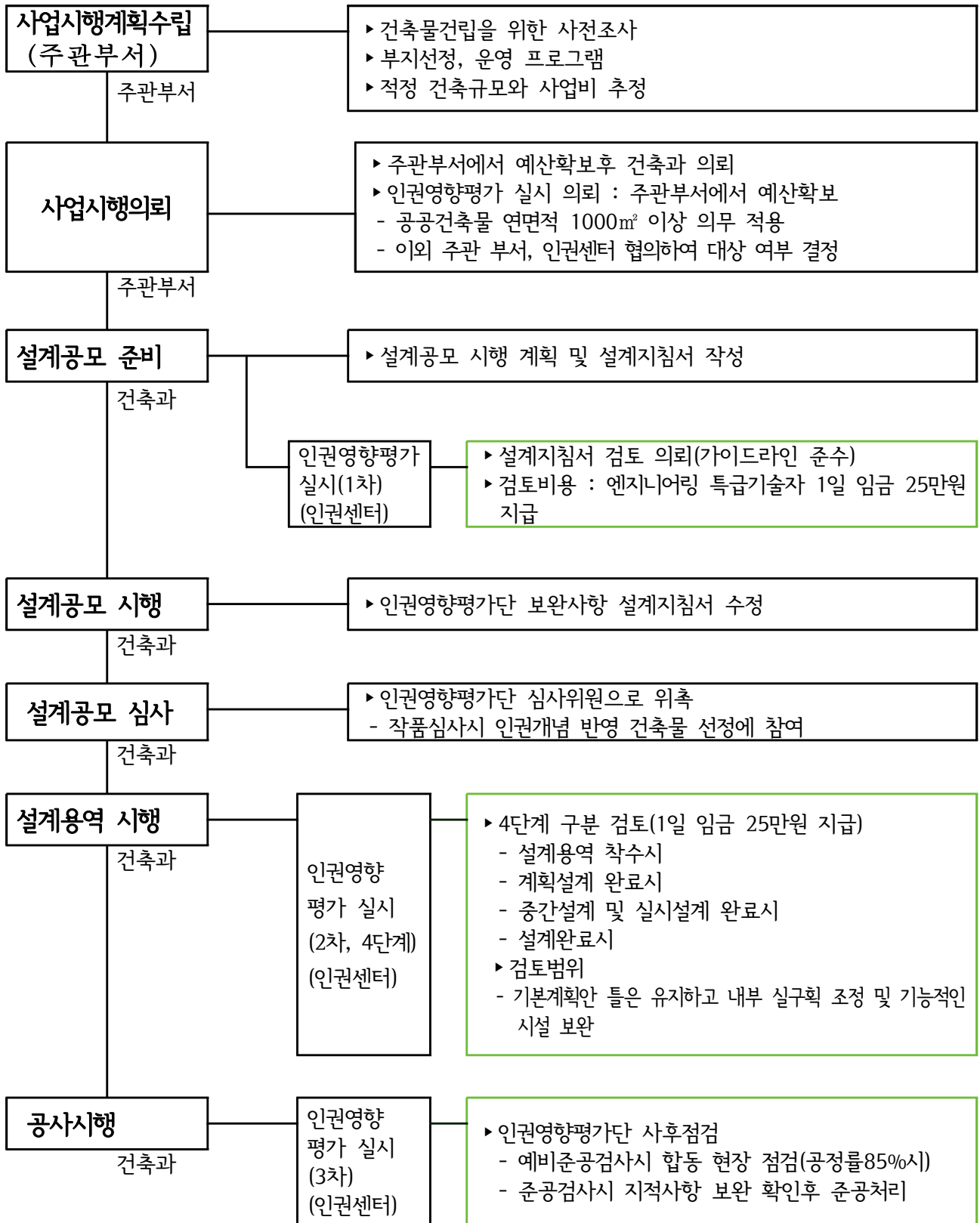
연 번	분 야	성 명	비 고
1	교수	이경선	홍익대 교수, 안암동 인권청사 인권감리단
2	건축가	이성석	하우제건축사사무소 대표
3	인권전문가	이윤하	안암동 인권청사 인권감리단, 성북구 인권위원회
4	건축가	전인호	(주)반디불환경계획연구소 대표
5	건축가	정기황	도시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창조도시위원회
6	인권센터	김정아	인권센터장

● 임기 : 2년 (필요시 2년 범위 내 연임)

● 역할

- 건축물 건립 단계별로 건축물 용도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인권 증진 및 인권침해 요소 평가 및 자문
- 공공건축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공공건축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작성

■ 시행절차



■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제작

→ 연구 용역 실시 또는 TF 구성하여 추후 실시(별도 구비 확보)

- 공공 시설물 건축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무장애(Barrier Free), 안전, 환경 및 주변 친화, 보수 및 지속가능, 사용 주체의 인권증진, 주민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준, 평가지표 등으로 활용하도록 함
- 표준 과업 지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 요소까지 충족하도록 함

VI

행 정 사 항

■ 인권영향평가 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만들기 별도 예산편성 : 인권센터
- 공공건축물 설계·시공시 인권 자문비용 확보(시설부대비) : 주관부서
※ 붙임#4,5 참고하여 특급기술사 1인 1일 임금 25만원 책정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추천(서식)

분야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 확대적용 대상 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여부 제출

- 관련부서 : 교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어르신복지과, 사회적경제과, 여성가족과,
- 제출일시 :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시 인권센터 협의 후 제출

주관부서	사업명	위치	규모	실시여부	진행일정요약 (미실시사유)

❖ 보고사항 4-6.

2015년 직원 인권 특강 운영 계획

■ 실시개요

- 교육기간 : 2015. 9. 8 ~ 9.9
- 교육대상 : 성북구 전직원
- 교육장소 :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교육내용

구 분	내 용	강 사	비 고
1강	인권과 법치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0'
2강	차별과 인권	한 채윤(인권운동가, 작가)	50'

■ 교육 일정 및 수강 인원

회 차	일정	교육시간	인 원	수강대상	비 고
1일차	9.8(화)	10:00~12:00	171명(37개 부서 각3명 + 20개 동 각3명)	전직원	
2일차	9.9(수)	10:00~12:00	171명(37개 부서 각3명 + 20개 동 각3명)		

■ 진행순서

- 개회 및 강사 소개 인권센터장(2')
- 구청장 격려 말씀 구청장(3')
- 인권교육 진행(인권과 법치) 해당 강사(50')
- 질의응답 해당 강사(5')
- 인권교육 진행(차별과 인권) 해당 강사(50')
- 질의응답 해당 강사(5')
- 폐회 및 설문조사 인권센터장(5')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신규·재발급 신청하거나 기재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보건소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소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설정) 구청장은 자동차표지에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시 자동

[붙임자료 : 조례안]

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별표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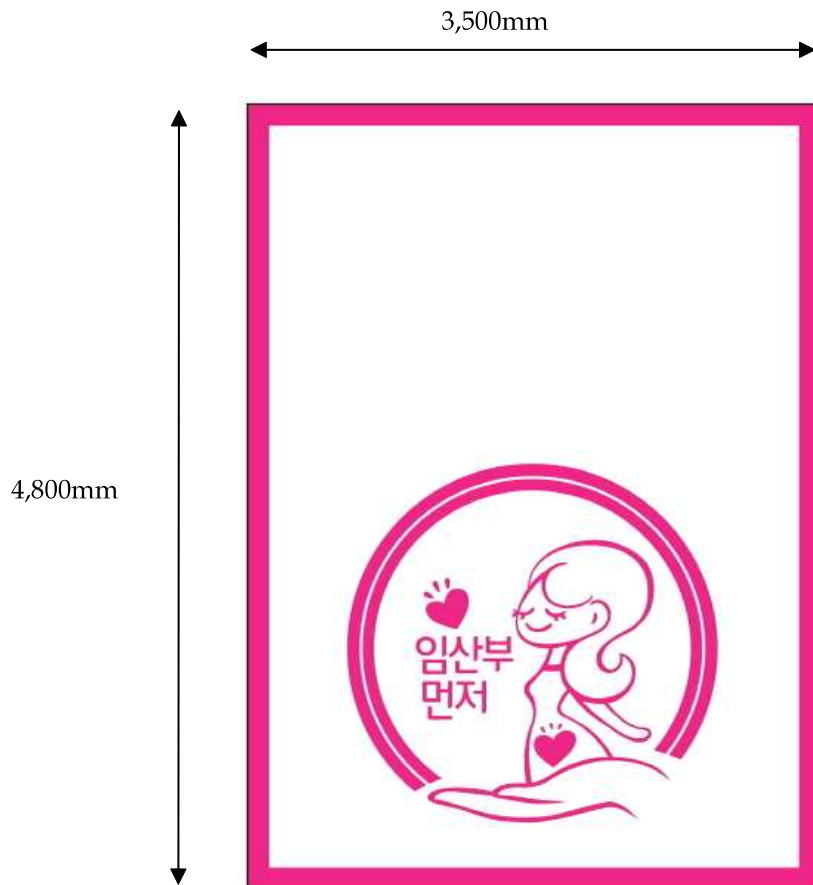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3,500mm × 세로 4,800mm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표시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표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 가로 700mm × 세로 600mm × 높이 1500mm

나. 색상 : 바탕(분홍색), 글씨(검정색)

2. 기재 내용 :



[별표 3]

임산부 자동차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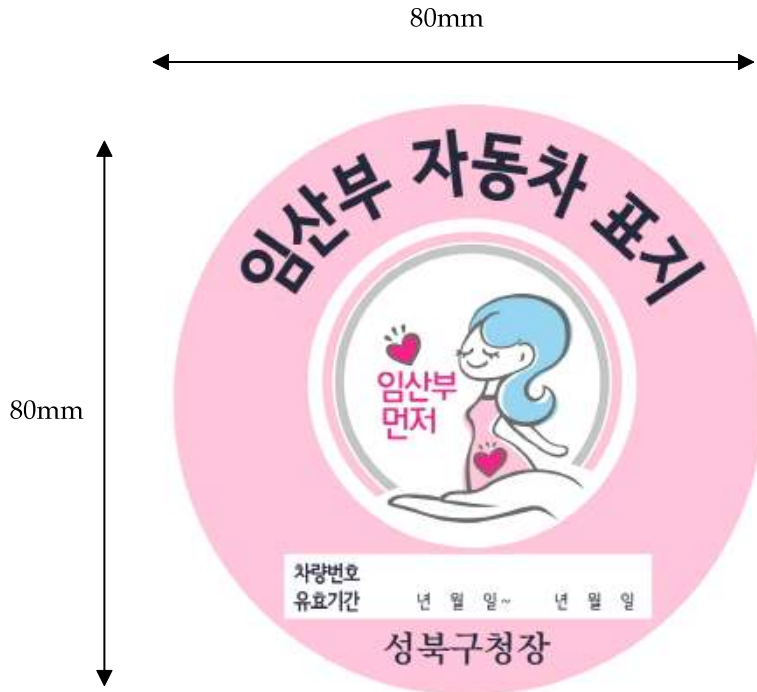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가로 80mm × 세로 80mm

나. 색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붙임자료 :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3조제3항 관련)

표지 번호	발급 일자	임 산 부				자 동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차량번호	차종/차명	성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희 거주자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 구획을 말한다.

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 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에서 비고란의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성북구민 포상 조례에 의해 성북구민대상을 받은자는 구민대상증을 발급

[붙임자료 : 조례안]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150,000	80,000	400	150,000	80,000
2급지	250	4,000	100,000	50,000	250	100,000	50,000
3급지	150	3,000	80,000	40,000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3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상한선은 1일 1만원으로 한다. 단 할인혜택 차량의 경우 당일 발생한 총 시간 주차요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 2) 구청장이 주차수요억제 등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붙임자료 : 조례안]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

마. 5급지

- 1)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2) 1~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6.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 8.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9.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10.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12.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

[붙임자료 : 조례안]

- 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성북구 자원봉사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자원봉사증을 지참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나. 자원봉사증을 미지참한 사람 및 자원봉사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4.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2, 3, 4, 5급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70퍼센트를 할인한다.
16.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17.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용자에게는 주차장 이용 시 한 차례만 요금을 할인하되, 할인요금은 2,000원까지로 한다.(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8.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성북구민 포상 조례에 의해 성북구민대상을 받은자는 구민대상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u> <u>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u> <u>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u> <u>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u> <u>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u> <u>있다.</u></p> <p><u>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희 거</u> <u>주자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u> <u>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u> <u>아 지정한 주차 구획을 말한다.</u></p> <p><u>③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u> <u>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적립식</u> <u>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u> <u>여할 수 있다.</u></p> <p><u>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u> <u>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u> <u>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u> <u>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u> <u>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u> <u>할 수 있다.</u></p> <p><u>⑤ 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u> <u>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u> <u>바에 따른다.</u></p>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앞의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4장 보 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사회투자기금) ①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이하 본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붙임자료 : 조례안]

- 4.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비 등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의 연번14란 다음에 연번15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연번	기금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5	사회투자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2015**년 당해 연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금별 존속기한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공용청사관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2	체육진흥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3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법정
4	차활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임의
5	노인복지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6	성평등기금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법정
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8	중소기업육성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0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1	도로굴착복구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법정
13	한옥보전지원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4	기후변화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5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 칙</u></p> <p><신 설></p>	<p><삭 제></p> <p><u>제27조(사회투자기금) ① 사회구 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 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이하 본조 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부터 전입금</u> <u>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u> <u>3.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u> <p><u>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u> <u>2.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u> <u>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 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u>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 <u>제27조</u> ~ <u>제29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투자사업 지원</u> <u>4.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u> <u>자사업 지원</u> <u>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u> <u>필요한 경비</u> <u>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u> <u>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u> <u>기금 공모사업비 등</u> <u>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u> <u>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u>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u> <u>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u> <u>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u> <u>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 칩</u> <u>제28조</u> ~ <u>제30조</u> (현행 제27조부 터 제29조까지와 같음)</p>
-------------------------------------------------------------------------------------------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750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4109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붙임자료 : 조례안]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 제정 2014-12-26 조례 제1021호

제10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기금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를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거나 별표 1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사업에 규정된 경우”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범위(제4조 관련)

분 야	사 업 명
자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의식개선운동 -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사업 - 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운동 - 국가안보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 주민 생활안정망 구축 활동지원 사업 - 동 마을문고 사업 활성화 - 방역 및 취약지역 청소 - 동네가꾸기 사업 - 바른선거 정착 활동 지원
주민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무료급식, 도시락 지원 - 취약계층 자활지원 - 나눔,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김장나눔 행사) - 어르신 문화시민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지원 <li style="padding-left: 20px;">문화예술체육 인성교육 <li style="padding-left: 20px;">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li style="padding-left: 20px;">청소년 보호 및 선도 등 폭력예방사업 - 아동·청소년 문화 및 체험활동 지원 <li style="padding-left: 20px;">청소년 가족 캠프 프로그램 지원 - 학부모 교육 강좌 지원- <li style="padding-left: 20px;">지역주민 강좌 지원

[붙임자료 : 조례안]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절전소 등 온실가스·에너지 줄이기 실천사업- 쓰레기 줄이기 실천 캠페인, 재사용 나눔 장터 지원- 나무식재, 동절기 조류 모이주기 등 환경보전 활동 지원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업-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문화 선진화 활동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 지방자치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삭 제>

②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

③ ~ ⑦ (현행과 같음)

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문화복지국장, 기획경제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행복도시”란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붙임자료 : 조례안]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르신행복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및 상담지도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붙임자료 : 조례안]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기타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노인 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붙임자료 : 조례안]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가정의 달·노인의 날·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경로·효행 및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구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에 기여한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어르신행복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3장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시행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어르신행복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붙임자료 : 조례안]

2. 어르신행복도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르신행복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및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노인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행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구민·기업·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준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을 “양성평등”으로, “성북구(이하 성북구)의 성평등”을 “성북구의 양성평등”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평등한 대우를”을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참여하고 대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북구의 성평등”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성북구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제2장의 제목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을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성평등정책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여성의”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여성의 권익”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

[붙임자료 : 조례안]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을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북구의회”를 “성북구 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을 “양성평등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1회에”를 “한차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성평등 촉진 시책”을 “양성평등 촉진 시책”으로 한다.

제16조 중 “여성”을 “특정 성별”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

[붙임자료 : 조례안]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양성평등이 동등하게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 기간 동안에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성평등의식 제고)”를“(양성평등 의식 제고)”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북구”를 “구”로, “성평등의식”을 “양성평등의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북구 및”을 “구”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을“(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발간하여야 한다”를 “발간할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여성주간 행사)”를“(양성평등주간 행사)”로 하고, 제31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를 “법 제38조”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

[붙임자료 : 조례안]

“영”이라 한다) 제26조”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북구에 소재하거나 성북구 주민”을 “구에 소재하거나 구민”으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36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으로 한다.

제37조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를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을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제40조제1항 중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서 따로 정한다.

제43조 중 “성평”을 “양성평”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성평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촉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 제18조 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3. 제18조제3항제1호 중 “성평등의 촉진”을 “양성평등의 촉진”으로 한다.
4. 별표 1의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 및 그 밖의 <u>여성</u>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u>성북구(이하 성북구)</u>의 <u>성평등</u>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u>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성북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성평등</u>"이란 <u>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u></p> <p>2. (생략)</p>	<p>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 「<u>양성평등기본법</u>」 -----<u>양성평등</u> ----- -----<u>성북구의 양성평등</u> ----- ----- ----- <u>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u>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u>양성평등</u>"이란 <u>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성북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북구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양성평등-----

-----.

② -----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참여하고 대우 --.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

-----.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

①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폭력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립) ①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

-----.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 리 --

3. 양성평등 -----

4. 양성평등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족생활 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 6. 그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 ② (생략)
 -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성북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

<삭 제>

<삭 제>

- 5. 양성평등정책 -----

- 6. -----양성평등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양성평등위원회 -----
-----.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신 설>

제9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북구의회 의원 2명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제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
-----.

1. 양성평등정책 -----

2. 성북구 의회 -----
3. 양성평등 -----

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성북구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
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
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16조(적극적 조치)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투자기관
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
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
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
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
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

④ -----

--양성평등정책 업무소관 부서
장 -----.

제10조(위원의 임기) -----

-----한차례 -----
-----.
-----.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제16조(적극적 조치) -----

-----특정 성별 -----
-----합리적
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하여 -----

-----.

제17조(구정참여 확대) ① -----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을 확대하고,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과하지 아니하도록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성북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북구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9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구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성북

-----.

② 구 -----
-----양성평등의식 -----
-----.

제2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

-----양성평등 -----
-----.

② -----구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양성평등 -----

-----.

② -----양성평등 -----

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0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여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

-----발간할수 있다.

제30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

-----양성평등-----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
-----법 제38조-----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양성평등-----

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구
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
다.

제5장 성평등기금

제41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
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
조 제1항에 의거 성평등의 촉
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
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
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
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
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3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
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
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
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등 -----

-----.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41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
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
금관리 기본조례』에서 따로 정
한다.

제43조(사전협의) -----
-----양성평등-----

-----양성평등-----

-----.

참고자료(관련법령)

1)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제5조, 제14조~제20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붙임자료 : 조례안]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

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분석평가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 의회 의원 2명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성북구 구민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붙임자료 : 조례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참고자료 : 관계법령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의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차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